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,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
10.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학교장 추천서 및 내신등급 확인서

(*추천번호 :)

인적사항	성명	(한자 :)	학교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성화고 <input type="checkbox"/> 마이스터고
기본사항	학교명		소재시	
	학과명	학과	학과정원	명
	졸업여부	년	월	졸업
내신등급	전학년 평균등급	() 등급	* 하단의 “㉑” 를 기재하고, 추후 증빙자료 제출	
구분	Σ(과목별 내신등급 × 과목별 이수단위)		총 이수단위	내신등급
1학년	①		②	①÷②
2학년	③		④	③÷④
3학년	⑤		⑥	⑤÷⑥
전체	⑦=①+③+⑤		⑧=②+④+⑥	*⑨=⑦÷⑧
1) 졸업예정자는 2학년 2학기까지, 졸업생은 3학년 전체 성적 산출 2) 성취도로 산출되는 과목은 A=1등급, B=3등급, C=5등급, D=7등급, E=9등급으로 산출 3) 예체능 및 Pass/Fail로 평가하는 과목은 산출시 제외(상세사항은 응시자격 및 작성요령 참조) *산출방법 : 평균등급 = 과목별 등급의 합 / 단위수의 합(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)				
추천사유	* 추천사유 5줄 이내 작성			
위 사람은 우리 고등학교의 졸업(예정)자로서 「2026년도 공무원연금공단 사무직 신입직원(채용형 인턴) 채용 공고」에 게재된 응시 자격요건에서 정한 해당자로 상기와 같이 내신등급을 확인하고, 귀 공단의 7급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				
2026년 월 일				
○○고등학교 교장 ○○○ (직인)				
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학교 담당자 연락처 : 직급 성명 연락처				

*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

<응시자격 및 작성요령>

□ 응시자격

- 내신 평균 2.0등급 이내 자로서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자 (한 학교당 5명 이내 추천 가능) ➡ *추천번호 1 ~5 까지 기재 가능

* '26.1.1.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('27.2. 졸업예정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)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최종학력이 대졸이상 또는 대학교 재적중(재학생, 휴학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수료자 등)인 경우 지원 불가

□ 산출방법

1) 산출기간

- 졸업예정자는 2학년 2학기까지, 졸업생은 3학년 전체 성적

2) 산출과목 : 전 과목

- 예체능 및 Pass/Fail로 평가하는 과목은 산출시 제외

3) 산출방식 : 전체 내신 등급 = $\Sigma(\text{과목별 내신등급} \times \text{과목별 이수단위수}) \div \text{총 이수단위}$

- 각 과목별 내신등급에 과목별 단위수를 곱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총 이수단위로 나누어 산정(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)

※ 단, A/B/C/D/E로 성취도가 산출되는 과목은

A=1등급, B=3등급, C=5등급, D=7등급, E=9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

□ 유의사항

- 1) 추천서는 접수마감일(2026. 5. 11. 18시)까지 채용홈페이지에 등록(스캔)되어야 합니다.
- 2) 증빙서류 제출 시 등급 산출내용에 대한 증빙서류(해당과목, 등급, 단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기재내용이 향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또는 기한 내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3) 내신등급 계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학교에 있으며, 제출하신 등급과 추후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별첨 4

서류전형 평가항목별 세부사항

1) 자격사항 - 5급(50점), 7급(50점)

- 자격사항은 5급(50점), 7급(50점) 만점으로 하며, 공통(5급만 해당) 부문에서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와 모집 전형별 자격증 중 높은 점수 자격증 1개만 인정
-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(레벨)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

<5급 - 사무>

모집전형	자 격 증	점수
공 통	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, 컴퓨터활용능력 1급	5점
	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	3점
사 무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, 법무사, 보험계리사, 감정평가사, CFA(국제재무분석사)	45점
	AICPA(미국공인회계사), CAIA(국제대체투자분석사), CMA(공인관리회계사), 국제FRM(국제재무위험관리사), CIA(국제공인내부감사사),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	30점
	투자자산운용사, 금융투자분석사, 국제투자분석사(K-CIIA), 재경관리사, 사회복지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, 산업안전기사, 산업위생관리기사	20점
	증권투자권유대행인, 펀드투자권유대행인, 회계관리 1급, 직업상담사 1급, 사회복지사 2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	10점

<7급 - 사무>

모집전형	자 격 증	점수
사 무	전산세무 1·2급, 세무회계 1급	50점
	전산회계 1급, 세무회계 2급	40점
	전산회계 2급, 컴퓨터활용능력 1급	30점
	세무회계 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	20점

2) 외국어 능력(30점) - 5급

- TOEIC, TOEFL(IBT), New TEPS, JPT, HSK(6등급), HSK(5등급), HSK(4등급)만 인정
 - 서로 다른 어학성적 2종 이상 소지한 경우 배점이 높은 점수 하나만 평가
-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시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하되,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시험 성적만 인정
 - '24. 5. 12. 이후 시험에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'26. 5. 11.)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 인정
- * 단, 취득 이후 2년이 경과했더라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(구 사이버국가고시센터)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을 통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은 인정

※ 평가기준

구 분	30점	27점	24점	21점	18점	15점	12점	9점	6점	3점
TOEIC	880 이상	875~840	835~800	795~760	755~720	715~680	675~640	635~600	595~560	555 이하
TOEFL (IBT)	103 이상	102~97	96~91	90~86	85~82	81~78	77~73	72~69	68~65	64 이하
New TEPS	355 이상	354~330	329~309	308~290	289~272	271~256	255~241	240~227	226~214	213 이하
JPT	880 이상	875~840	835~800	795~760	755~720	715~680	675~640	635~600	595~560	555 이하
HSK (6등급)	180점 이상	-	-	-	-	-	-	-	-	-
HSK (5등급)	282 이상	281~255	254~232	231~212	211~195	194~180	-	-	-	-
HSK (4등급)	-	-	-	-	-	300~270	269~241	240~214	213~189	188 이하

※ 관련 성적이 없는 경우 "0"점 처리

※ 청각장애인(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인 기준 2·3급) 환산기준

구 분	TOEIC, JPT	TOEFL(IBT)	New TEPS	HSK
환산기준	독해성적×200%	(독해+쓰기성적)×200%	(문법+어휘+독해 성적)×167%	(독해+쓰기성적)×150%

3) 학업성적(50점) - 7급

- 해당학교 전 학년 종합성적 입력
 -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2학년 2학기까지 성적 입력
 - 예체능과목(학교생활기록부상 체육·예술(음악/미술) 교과목) 및 Pass/Fail 평가과목 입력 제외

4) 교육사항(20점) - 5급

○ 평가기준 : 공단 NCS 직무관련 교육 평가

○ 채용분야별 직무

구분	직무수	공단 직무
사무	15	경영기획, 고객관리, 인사관리, 노무관리, 예산, 자금, 회계감사, 세무, 법무, 행정, 연금, 언론홍보, 사회복지, 사회통계, 재활상담

○ 정규 교육과정 : 학교교육, 학점은행제 등 학위취득과정

- 직무 당 최대 5개까지, 총 10개까지 입력 가능(이수학점 큰 순으로 입력)
- 성적증명서 등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과목 및 이수학점(단위) 입력
- ※ 예시 : 2024년 2학기 세법1(3학점), 2025년 1학기 세법2(3학점)을 수강한 경우
→ 올바른 입력 : 세법1(3학점), 세법2(3학점) 각각 입력 / 잘못된 입력 : 세법(6학점) 합산입력

○ 기타 교육과정 : 공단 직무 관련 직업훈련과정 등

- 총 5개까지 입력 가능, 16시간 이상 교육수료 과정에 한하여 인정
- 직업훈련과정 중 공단 NCS 직무관련 교육만 인정

5) 자기소개서

작성 문항
1. 우리 기관에 지원한 동기와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
2.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경험을 작성하고, 각 대안의 장·단점과 최종 선택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
3. 팀 프로젝트에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과 이후 본인이 취한 행동, 그리고 최종 결과를 작성해 주십시오
4. 본인의 노력으로 성과를 개선했던 경험을 작성하고, 개선 전후의 차이를 수치 또는 결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

○ 자기소개서는 적·부 심사 후 적합자에 한해 서류전형 실시

※ 자기소개서 적·부 심사

- 아래 불성실 기재의 경우 서류전형 정량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
- ① 기재내용이 없거나 특정문자만 반복하여 기재, ②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 작성, ③ 허용글자수의 30% 미만 기재, ④ 표절률 30% 이상

□ 비수도권 및 제주(이전)지역 인재의 정의

- 비수도권 인재 :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(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)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자
- 제주(이전)지역 인재 : 이전지역(제주)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자
 - ※ 대학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
- 2개 이상의 대학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 인정기준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(※ 분교가 아닐 경우에는 ‘본교’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)
 - * 분교운영 학교(예시) : 고려대 세종, 동국대 경주, 연세대 원주(미래), 건국대 글로벌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
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비수도권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대학원, 사이버대학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제주(이전)지역 학교 인정기준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제주지역에 속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 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 (이원화 캠퍼스)
 - ※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(제주)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제주 지역인재에 포함되며, 이 경우 제주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※※ 이전지역(제주)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(제주)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제주 지역인재로 포함
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- 이전지역(제주)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

※ 외국학교 및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□ 그 외의 제주(이전)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이전지역 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학교*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중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*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
*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,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
*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
*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※ 그 외 「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」준용

□ 비수도권 및 제주(이전)지역 인재 여부 입증

- 증빙서류 제출시 졸업(예정)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

- 분교인 경우 분교 졸업(예정)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

※ 제주(이전) 지역 인재 해당여부

<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 재학생인 경우 >(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판단)

고등학교 소재지	
제 주	제 주 외 지역
이전지역 인재	해당 X

< 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>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제주 지역에 위치한 경우
: 분교·지방캠퍼스는 제주 인재에 해당
 - 본교가 타 지방(수도권·제주지역 제외)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제주 지역에 위치한 경우
: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제주지역의 제주 인재에 해당
- ※ 본교 학생은 비수도권 인재, 분교·지방캠퍼스 학생은 제주 지역인재에 해당**

< 제주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>

-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제주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>

-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제주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제주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제주지역 인재에 해당**

<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제주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제주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>

- 제주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제주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제주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제주지역 인재에 해당**

<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>

- 제주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>

-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제주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
별첨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

장애유형(장애정도)		필기시험	면접시험	
지체 장애	상지 지체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
하지지체	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	
뇌병변 장애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	
	장애정도가 심한 자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	· 개별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* 의사 진단서 1부	· 공통 편의지원	
시각 장애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	
	장애 정도가 심한 자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1.7배 연장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* 의사 진단서 1부	· 관련서식 점자 지원 · 음성지원 컴퓨터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	
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1.7배 연장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* 의사 진단서 1부	· 관련서식 점자 지원 · 음성지원 컴퓨터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관련서식 점자 지원 · 음성지원 컴퓨터	· 공통 편의지원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* 의사 진단서 1부	
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		
청각 장애	공통	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,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·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의사전달보조요원 · 필담면접, 의사전달용 컴퓨터 · 관련자료 서면제공	

장애유형(장애정도)		필기시험	면접시험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	·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*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(검토 후 안내)	·장애정도 검토 후 안내
	임산부	·높낮이 조절 책상 ·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(의사 소견서 1부)	·높낮이 전용책상 ·전담도우미 지원

- ※ 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기준으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선택
- ※ 증빙자료(의사진단서 등)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시험일 이전에 제출

※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

※ 반드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2. 발급일자 :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3.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
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
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 및 중·경증 여부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점자문제지,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

- “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”
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별첨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

□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 기준

- 채용모집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전형은 채용 면접단계에서 특정 성별이 합격예정인원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, 30%에 도달할 때까지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
- (채용 목표인원) 5명을 초과하는 전형 선발인원의 30%
 - ※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산정
 - 해당 성별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 처리
 - 선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, 합격자 임용포기·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른 충원에는 적용되지 않음

□ 채용인원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